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란?

유엔이란?

유엔(국제연합)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1945 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193 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모두 1991 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유엔은 유엔 헌장에 설립 근거를 두고,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유엔은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인권 및 국제법 증진, 사회적 진보 및 생활수준 향상, 무력 사용 제한,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유엔 기관으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1945 년 유엔 설립 당시 조직된 기관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모두 총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회원국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15 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인권이사회란?

인권이사회는 47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제도 내 정부간 기구로, 전세계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은 총회가 지역별로 선출합니다. 또한 총회 투표를 통해 회원국을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193 개 회원국 중 117 개 회원국은 최소 한 번 이상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당해 주목해야 할 주제별 인권 사안과 상황을 모두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안이나 우려되는 지역을 살피기 위해 독립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사무소)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루는 주된 유엔 사무소입니다. 1948 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수장은 인권최고대표이며 현재 미첼 바첼레트가 재임 중입니다. 인권최고대표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고,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를 지원하고, 유엔의 3 대 축인 평화 및 안보, 발전, 인권을 상호 증진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015 년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도록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다음의 위임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을 목표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강화
- 모든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역량 강화 증진
- 지속적인 소통, 옹호활동, 지평확대 노력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조사위원회

독립전문가그룹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책임 규명 업무

특별보고관

조사위원회

인권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인권이사회는 2013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1 년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4 년 제출한 보고서에 해당국 내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국제공동체에 권고한 내용 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당국 상황을 회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권고하였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

인권이사회는 2016 년 인권최고대표로 하여금 독립전문가그룹을 설립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특히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게 진실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2017 년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책임 규명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임시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보편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범죄를 소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책임 규명 업무

앞서 언급한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향후 형사재판에 대비하여 기초작업을 강화하도록 국제공동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인권이사회는 서울 현장사무소를 비롯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전문가그룹의 형사 책임 규명 관련 권고를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구축하며,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될 전략 마련을 위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가 정보 및 증언을 모두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와 독립전문가그룹의 업무는 완료 되었으나, 이들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업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 독립조사메커니즘이나 시리아 조사지원메커니즘 등의 다른 유엔 책임 규명 메커니즘과 달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건 파일을 준비하거나 개인 상대 소추를 제안할 수 있는 위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업무에 더하여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위임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 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독립된 전문가로,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으며 유엔 직원 신분도 아닙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및 해당국 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이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며, 매년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외에도 주제별 인권 사안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라면 누구든 위임권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초청을 받아 해당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보고관입니다.